제2주제

#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

이 희 정 (아주대학교 교수)

#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

2007. 5. 16.



# **CONTENTS**

들어가는 말

좋은 아파트와 좋지 못한 아파트?

좋지 못한 아파트 금지하기

- 공동주택건립 지구단위계획 지침
- 공동주택 관련 최근 논의 경향

좋은 아파트 짓게하기

- 좋은 아파트 국내외 사례
- 좋은 아파트 만들기 가이드라인 여



들어 가는 말

좋은 아파트와 좋지 못한 아파트?



# 좋지 못한 아파트





### 주변과 조화되지 못한 주거지 경관 – 나홀로 아파트

- 지역성과 경관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주거지 고도관리방식
   의 한계로 인해 돌출형 아파트 개발 등 주변과 조화되지
   못한 주거지 경관 문제 심화
- 저밀 저층 노후 주거지에 고층아파트가 침투하게 되어 주 변환경과 부조화된 '나홀로 아파트' 건설
- 주변 주거지의 일조권, 조망권, 사생활 등을 침해, 도시경관 악화

###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구릉지 경관 훼손

- 구릉지 지역의 고층 아파트로 인해 주변지역과의 시각적 부조화 및 단절을 초래
- 자연지형에 대한 지나친 훼손으로 자연경관이 점차 훼손

# 좋지 못한 아파트



# 획일적이며 아름답지 못한 주거지 경관

- 판상형 일차배치 등으로 인해 딱딱하고 획일적인 경관 형성
- 주동 높이가 큰 변화 없이 단순하여 획일적인 스카이라인 형성
- 조악한 아파트 디자인



#### 도시기반시설의 부족

-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아 도시 기반 시설의 부족의 현상이 나타남 → 주거의 질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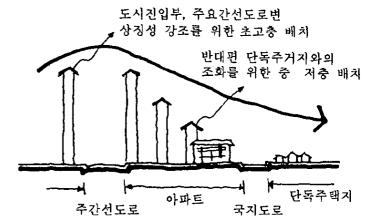
# 좋지 못한 아파트

폐쇄적인 공간구성과 차단 방음벽



#### 도시 스카이 라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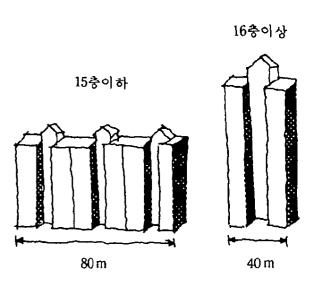
- 주요 간선도로변 스카이 라인
  - 단독주택가의 도로 반대편에는 고층 아파트 대신 중·저층 아파트를 유도며 도심성을 강조하는
     의미에서 도심에 인접한 건축물의 층고를 높임
  - 도시 진입로, 주요 간선 도로의 교차로 부근에 는 상징성을 가지도록 초고층 건물을 유도
     → 랜드마크적 역할
  - 넓은 중앙공원이나 조망 좋은 곳에 초고층 건물을 유도 → 조망을 충분히 활용
- 블록 내 스카이 라인
  - 블록내 보행자 전용도로의 결절점 및 어린이 공원 주변에 높은 건물을 유도하여 단지내 방 향식별과 위치 인지도를 높임
  - 건물 스카이 라인의 변화로 지구별 특성을 강 조하여 비슷한 높이의 건물이 반복 배치되어 경관이 단조로워 지는 것을 방지





#### 건축물 형태 및 배치

- 아파트 층수
  - 건물의 층수를 초고층, 고층, 중층, 저층 4단계로 유형화하여 조정, 주요 간선도로와 블록단위의 스카이라인에 맞도록 초고층 및 중층 아파트의 배치위치를 지정
  - 위의 위치에 각각 타워형의 초고층과 10층 이하의 중층이나 저층 아파 트를 유도
-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
  - 건물의 크기, 인동간격, 공간감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길이는 건물 높이 에 반비례되도록 유도
  - 초고층 아파트는 가능한 타워형이 되도록 유도, 전면길이의 기준은 주 택 유형별로 설정
- 건물 1층의 개방
  - 지상 1층의 건축면적의 일부를 개방하여 지층에서의 공간감을 확보, 통 로로 사용
  - 부분개방에 대한 유도책으로는 고층 입지 부분에서의 16층의 배치를 가능케 함
- -비슷한 크기의 판상형 아파트가 같은 방향과 인동간격으로 배치되는 것을 가능한 억제
- -프라이버시의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의 일부를 주된 건물향의 직각방향으로 배치하도록 유도



### 아파트 색채

-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칠하여지는 면의 넓이에 따라 주조색, 보조색, 강조색 3가지로 유형화 하여 조정
  - 주조색은 통일하고 보조색과 강조색에서 변화 연출

### 아파트 입면

- 변화감 있는 외부 공간의 조성 및 다양한 경관 형성을 위해 입면 변화를 유도, 아파트의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기 위 해 권장
- 색채, 창호, 계단실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



#### 옥탑 및 지붕

- 옥탑 형태
  - 상층부의 지붕과 통합된 형태
  - 물탱크실 설치금지 및 기계실 돌출높이 제한
- 지붕 형태
  - 경사지붕 권장 → 단순맞배지붕은 지양, 분절된 형태 개발
  - 최상층 특화 → 경사지붕으로 인한 다락방 설치 및 복층형 권장





좋지 못한 아파트 금지하기

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지침



#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수립의 배경 및 내용

- ▷ 공동주택 건립 시 개발에 따른 기존환경의 변화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시환경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고,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주거지역 조성을 유도함
- □ 그러나, 용도지역 세분 이후 용도지역 세분 변경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종세분 변경에 대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으며, 그 외 공공기여도에 따른 용적률, 기부채납 비율 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기준의 수립이 요구됨
- ▷ 또한, 주택법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, 택지개발촉진법,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 되며, 2005년 3월에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므로,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
- ▷ 따라서,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의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심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# 관련 법률 검토

# ■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

관련법률	조항	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
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	제51조	·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/ ·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/ ·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
국토법 시행령	제43조	·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(300세대 이상, 1만㎡ 이상)
부산시 도시계획 조례	제16조	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대상사업으로서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부지

### ■ 타 법률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의제

- ▷ 도시개발법,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수립되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포함되므로 개발계획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도록 하여, 실시계획 승인 시 동시에 지 구단위계획이 결정됨
- ▷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비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봄
- ▷ 주택건설 사업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슝인받게 되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함

#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

# ■ 관련 법률상의 문제

- ▷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부분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므로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지구단위계획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 혼란이 발생하게 됨
- ▶ 특히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슝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어 도시관리계획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
- ▷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과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, 도시관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운영방안 수립이 필요함

### ■ 지구단위계획의 문제

- ▷ 용도지역 세분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당수 차지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
- 따라서 용도지역의 세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수립과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
- ▷ 또한 용도지역 변경 시 용적률, 높이 등 개발밀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개발밀도의 상향이 예상되므로 종상향에 따른 합리적인 개발밀도의 설정이 필요함

# 관련 법률과의 관계설정

# 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
- ▷ 용도지역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정비계획에서 포함할 수 있음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도지역 세분 변경이 가능함
- ▷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분별한 종상향에 의한 과밀개발 및 난개발이 우려됨
- ▷ 또한 지구단위계획과의 역할 및 내용이 정비계획의 내용과 상충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

### ■ 주택법

- ▷ 면적이 1만㎡ 미만: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,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여,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음
- ▷ 면적이 1만㎡ 이상 :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슝인을 받아야 하지만,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고,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를 거쳐, 사업계획 슝인을 받을 수 있음
- ▷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 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워졌으며,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하게 됨

# 관련 법률과의 관계설정

# ■ 대구시 공동주택 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업무처리방안

- ▷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시 또는 구·군 도시계획위원회(지구단위계획심의분과위원회)에서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택법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의제결정을 하도록 함
- ▷ 지구단위계획심의분과위원회를 각 시 및 구.군에 각각 설치 · 운영
- ▷ 건축물 높이가 허용범위에서 4개츙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함

# ■ 운영의 기본방향

- ▷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 대하여,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의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
- ▷ 대구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심의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▷ 다만, 대구시의 사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완화 범위가 뚜렷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

# 개발밀도 기준 수립

# ■ 용적률 기준 설정 사례 (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)

구분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상한용적률
용도지역 상향 (변경/세분시)	·용도지역 변경전 용적률 범위안 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	·변경전 용적률 + (변경 후 용적률 - 변경전 용적률) × 2/3 이내	·허용용적률× (1+1.3 a) 이내 ·기준용적률× (1+1.3 a) 이내
용도지역 동일 (세분시)	·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안에 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	·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이내	·허용용적률×(1+1.3 a) 이내
용도지역 하향 (변경/세분시)	·용도지역 변경후 용적률 범위안 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	·용도지역 변경후 용적률 이내	·허용용적률×(1+1.3 a) 이내

lpha란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함

# ■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

구 분	용적률 완화	근거법
지구단위계획 수립시	·공공시설부지 제공 시 완화식 = 용도지역용적률×〔1+1.5×(공공시설제공면적÷공공시설제공후면적)〕이내 ·대지내공지 확보 시 완화식 = 건축법에 의한 완화용적률+(용도지역용적률×의무면적 초과면적의 절반÷대지면적) 이내	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(국토법)
정비계획 수립시	·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 이하(조례 제50조 3항) ·공공시설부지 제공 시 완화식 = [1+(2×제공면적 ÷당초 대지면적)] × 조례에 의한 용적률	국토법 부산시 조례

# 개발밀도 기준 수립

■ 용도지역 세분 변경에 따른 공공용지 부담률 (서울시 단독주택등 저충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 변경)

구 분	공공용지 부담률(순수부담)			
T E	종세분 변경이 없음	종세분 변경 수반	층수 완화(3개층 이하)	
단독주택지 및 나대지 등	15% →10%이상	20% → 15%이상	10%이상	
공동주택지	5%이상	10%이상	5%이상	

# ■ 운영의 기본방향

- ▷ 서울시의 경우를 검토하여 용적률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
- ▷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용적률 및 용적률 완화 기준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,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
- ▷ 용도지역 세분 변경을 하는 경우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을 명시하여 과밀개발을 방지토록 함
- ▷ 종상향에 따른 공공용지 부담률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형평성 유지 및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 유도
- ▷ 녹지지역 등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하향조정 및 기반시설 부담률 설정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유지
- ▷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시, 공공용지 부담률과 연동된 용적률 기준 수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# 공통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비교

구 분	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	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매뉴얼 (공동주택)	서울시 공동주택 지구 단위계획	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(공동주택)	부산시 공동주택 지구 단위계획
	용도지역.지구			•	
도시계획	기반시설		0	0	
エ시계속	공원 및 녹지		0		
	가구 및 획지	0	0		
	건축물의 용도	•		0	0
	건폐율	0			
	용적률			•	
	높이		0		
	건축물의 배치				
21+0	건축선		0		0
건출물	건축물의 형태/색채	0			
	공동개발 / 합벽건축				
	대지내공지				
	교통처리			•	0
	경관		0	•	
	환경관리		0	•	0
	(울타리/담)	0			
기타	(토지이용제한 기타)				
	특별계획구역			0	
	(인센티브 및 패널티)				

<sup>※ ●:</sup> 중점 검토사항(부산시의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되는 공통적인 지침사항), ○: 검토사항

####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- 도로

- 도로설치 기준의 검토
  - 도로의 확보 기준은 기본적으로 계획구역내 건축되는 계획세 대수의 규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도로 확보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함
  - 주택지역내에 위치하는 돌출형 아파트 및 다수의 단독필지 합병 후 공동주택 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도로의 폐지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따른 도로 확보는 검토 구역 전체차원에서 필요여부가 검토되어야 함
- 적용계획기준
  - 도로 변경·폐지 기준은 서울시의 「저층 저밀도지역의 재건축 (나홀로아파트)관리방안(2000.12.9)」의 방침 기조가 우선한다.
  - 도로폐도시 기존 도로의 폭원보다 계획구역과 접한 도로의 폭원이 좁을 경우 도로폐도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
  - 폐도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체시설을 조성해야 한다.

#### 도로폐지가 불가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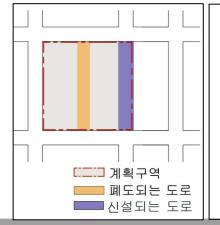


우 보두가 폐지되는 도로 원이 좁은 경 경

#### 도로폐지가 가능한 경우



계획구역과 접한 도로 되는 도로보다 폭원이 돼은 경우



이용의 편의를 위해 폐지되 는 도로폭원 그 이상이로 확

####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- 도로

- 대체시설의 조성 기준
  - 계획구역내 도로의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면적의 확보 방법은 폐지되는 도로의 폭원 및 검토구역 내외부의 교통현환에 따라 도로 및 기타 도시기반시설로서 조정이 가능하며, 폐또되는 도로의 폭원에 따라 대체시설의 확보 기준을 차등 적용
  - 4m 미만의 도로폐지시: 대체시설 확보 불필요
  - 4m이상~6m 미만의 도로폐지시 : 폐도되는 도로 면적의 50%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을 대체시설 부지로 확보하도록 한다.
  - 6m이상 도로 폐지시: 폐도되는 도로면적의 100%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체시설 부지로 제공하도록 한다.
  - 8m 이상 도로의 폐도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
- 심의시 검토사항
  - 대체시설의 조성
  - 대체시설로서 조성된 도시기반시설의 위치, 형태, 면적 및 조성방법의 적정성 여부
  - 재체시설이 기부채납에 의해 조성되는지 여부
  - 도로폐지시 계획구역 주변부의 통행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여부
  - 차량출입구의 위치
  - 진입도로 적정폭원 및 적정길이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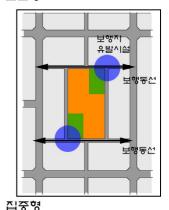
###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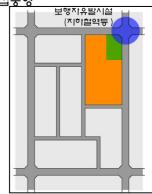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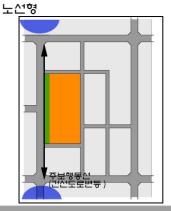
####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- 공원 및 녹지

- 공원 확보 기준(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기준적용)
  - 확보대상: 계획구역의 면적: 30,000m² 이상
  - 설치기준: 단지면적의 5%와 세대당 2㎡중 큰 면적이상을 확보한다.
-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원칙
  - 공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린이 공원 설치면적(최소1,500㎡)이상으로 면적이 확보되 도록 한다.
  - 계획구역 반경 250m내(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 유치거리)에 기존공원이 있거나, 도시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에 의해 공원 및 녹지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도시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.
  - 공원면적이 1,500㎡이상인 경우, 초과하는 공원면적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은 되지는 않으나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공개공지 등의 경우 확보 면적의 ½을 공원 및 녹지면적으로 인정해 준다.
- 심의시 검토 사항
  - 공원 및 녹지 조성시 주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의 여부
  - 주변지역 주요 보행동선 및 계획구역내 보행동선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
  - 공원 및 녹지의 형태는 지역 및 검토구역의 여건에 따라 노선형, 분산형, 집중형 등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.

#### 분산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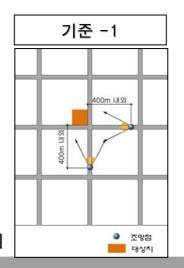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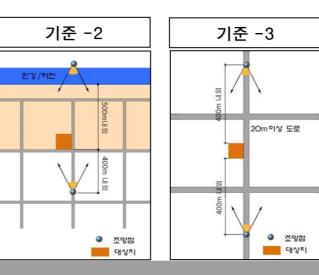




####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- 조망형 경관계획

- 조망점의 경우 주로 중경과 원경에서의 도시경관 검토를 위한 사진합성시 필요한 것으로 본다..
- 조망점 선정의 일반 기준
  - 기준 1. 계획구역이 블록의 가각부에 위치한 경우
    - 계획구역과 연결된 도로상 2개소 이상의 지점
  - 기준 2. 한강변 및 주요 하천변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경우
    - 한강 및 주요하천 건너편 및 한강 및 주요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서 각각 1개소 이상 지정
  - 기준 3. 20m 이상의 도로변에 접하는 경우
    - 계획구역의 진입방향으로 2개소 이상





[조망점 선정기준]

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- 근경계획의 검토기준

• 인접대지경계선과 직접 접하는 경우

인접대지경계선과 직접 접하는 계획 구역 내 건축물의 부분별 최고 높이는 12층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 한계선 6m를 지정하고, 13층 이상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4배 이내로 한다.



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적정 이격거리 확보로 계획구역과 연접된 필 지의 경관상 위압감 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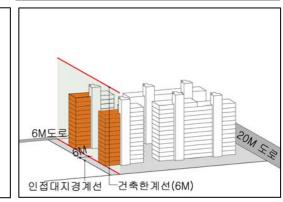
#### [이격겨리 산정예시]

구 분	건축물 높이	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	비고	
12층 이하 부분(11층)	≒ 31m	6.0m	층고 2.7m	
13층 이상 부분(15층)	≒ 42m	10.5m	적용시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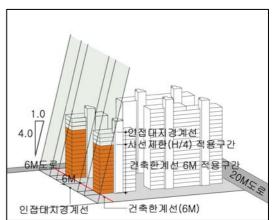
#### [연접부 경관처리 기준 예시]

### 인접대지경계선

12층 이하인 부분



13 층 이상인 부분



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- 근경계획의 검토기준

• 인접지 용도지역에 따른 절대높이제한 적용

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직접 접하는 계획구역 내 주동의 경우 최고높이를 7층 이하로 한다.(단, 15m미만 도로로 구 획된 경우는 직접 접한 것으로 본다.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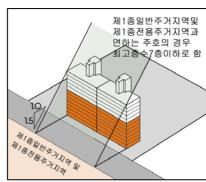
제1종전용주거지역 최고 층수(2층이하)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 층수(4층 이하)와 층수 차이에 의한 경관상 부조화 예방유도

#### [사선제한 적용 예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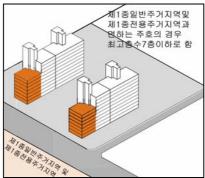
구분		절대높이 미적용시	절대높이 적용시	비고
측면과 면하는 경우		7층(20m)		• 12m 도로가
주개부 와 면하 는 경우	도로가 정북방향에 있는 경우	6층 (18m)	7층 . (20m)	가장 넓은 도 로인 경우 • 건축선으로부 터 3m 이격하 여 건축시
	도로가 정북 방향에 있지 않는 경우	11층(30m)		

#### [절대높이 제한 적용예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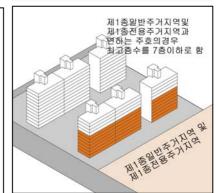
주개부와 면하는 경우



측벽과 면하는 경아



인접대지와 면하儿 경아



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- 근경계획의 검토기준

• 가로경관 향상계획의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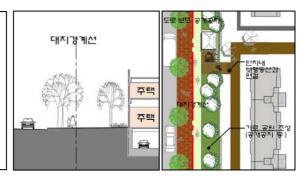
계획구역내 가로와 경계를 이루는 부분은 가로 경관 향상 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. (가로 공원의 조성, 중·저층 연도형 주택, 저층부 상업 시설의 입지 유도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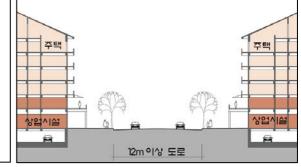
가로변 경관 향상 계획 제출유도로 가로변 보행활성화 및 차별화 유도 (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제출)

#### [가로경관 향상계획 사례예시]

가로공원 조성



연도형 주택







[가로경관 계획 예시]

# ■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수립에 관한 논의사항

문 제 점

-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부분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므로,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등 지구단위계획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 혼란 이 발생하게 됨
- 특히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어 도시관리계획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
- 용도지역 세분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당수 차지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

개선 방향

-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과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, 도시관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운영방안 수립 필요
- 용도지역의 세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수립과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 필요
- 또한 용도지역 변경 시 용적률, 높이 등 개발밀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개 발밀도의 상향이 예상되므로 종상향에 따른 합리적인 개발밀도의 설정 필요

운영 기준 수립

•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을 검토하고, 해당지역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, 그 지역에 적합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을 수립토록 함

#### 공동주택 관련 최근 동향

#### 서울시 평균층수 개념 도입

- 제28조 (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(이하 "정비구역"이라 한다)에서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12층 이하로 하되,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서는 평균층수 7층 이하로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.(신설 2006.03.16)
  -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하되,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평균층수를 11층 이하로 할 수 있다.
 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기부 채납함으로써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평균층수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.
  - "평균층수"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.(본항 개정 2006.03.16)

### 공동주택 관련 최근 동향

#### 경기도 종세분 상향 조정

-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상향조정은 1단계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.
-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세분시에는 용도지역의 개발 밀도와 층수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도시경관의 다양 성을 유도한다. 즉, 개발밀도를 고정한 상태에서의 층수 조정의 운영이 이에 해당된다.
- 도시지역으로 신규편입된 시가호예정용지나 미지정지에 대한 신규용도지역의 지정시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후, 계획내용에 따라 시가화구역의 용도지역 지정이 원칙이며, 지구단위계획의 미지정시에는 자연녹지로 선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지정한다.
- 재건축대상지에 대한 종세분시에는 현재의 용적률과 층수를 기준(제1종 또는 제2종)으로 지정하고, 필요한 경우 지구 단위계획의 선수립 시 개발계획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세분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.

좋은 아파트 짓게하기

좋은 아파트 만들기 가이드라인 등



# 좋은 아파트 만들기 유도방안

- 1) 가이드라인 마련
- 지구단위계획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의 작성과 운영
- 도시경관관련 세부 고려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반영
- 2) 기타 관련 제도 개선 등
- 선진적인 운영시스템의 마련 (디자인심의회 혹은 총괄건축가 MA 제도 도입 등)
- 용도지역제의 개편 :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등
- 조화된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높이 기준의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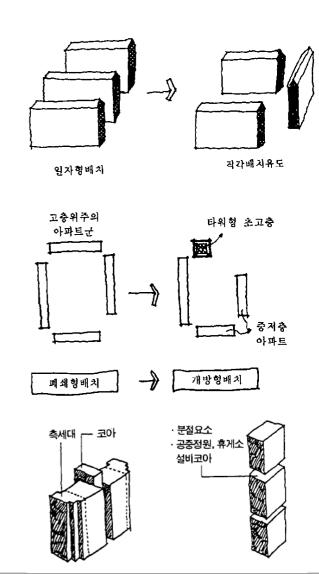
#### 건축물 배치 및 행태계획

#### - 주거동 배치

- 층수 유형별(초고층, 고층, 중층, 저층) 혼합에 따른 배치를 원칙으로 함
- 건물의 크기, 인동간격, 공간감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의 길이는 건물 높이에 반비례하도록 유도
- 폐쇄형 보다는 개방형 배치를 원칙
- 평행 배치를 제어하고, 프라이버시의 침해나 밀퍠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의 일부를 주된 건물향의 직각방향으로 배치하도록
- 경사지는 지형조건을 극복하면서 지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함

#### - 주거동 입면

- 변화감 있는 외부공간의 조성 및 다양한 경관형성을 위해 입면변화를 유도
- 주거동의 입면을 지상부, 중간분,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, 창호, 발 코니 등의 구조물,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 권장
- 초고층 주거동의 거대한 매스에서 느끼는 거대함, 위압감을 순화시 키기 위해 몇개층 마다 수평적 분절 요소 도입



#### 건축물 배치 및 행태계획

- 주거동 입면
  - 변화감 있는 외부공간의 조성 및 다양한 경관형성을 위해 입면변화를 유도
  - 주거동의 입면을 지상부, 중간분,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, 창호, 발 코니 등의 구조물,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 권장
  - 초고층 주거동의 거대한 매스에서 느끼는 거대함, 위압감을 순화시 키기 위해 몇개층 마다 수평적 분절 요소 도입







#### 건축물 옥탑 및 지붕계획

- 옥탑형태
  - 옥탑 형태에 변화를 주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
  - 옥탑은 지붕의 형태를 고려하여 디자인, 색채 통일
  - 옥탑에 물탱크실 설치 금지
- 지붕형태
  - 단순 맞배지붕은 가급적 지양, 통일감 있으면서 분절된 형태의 지 붕 개발 필요
  - 블록별로 다양화하되, 한 블록 내에서는 통일감 있는 디자인 유도









#### 건축물 색채계획

-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, 보조색, 강조색 3가지로 유형화하여 조정
  - 주조색은 통일하고 보조색과 강조색에서 변화 연출
  - 블록별 특화색 설정
- 색채적용 건축요소
  - 건축물 전면, 후면, 측면의 외벽
  - 지붕, 옥탑, 주동 입구, 계단실의 외벽 등
- 입면의 색채 적용
  - 기단부, 중층부, 상층부로 나누어 입면 색채계획
  - 블록별 칼라를 주출입구, 부속동 및 지하 주차장 등에 사용





## 좋은 아파트 만들기 가이드 라인 예

#### 경관계획

- 기본방향
  - 경관은 근경, 중경, 원경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달리 적용
  - 근경 경관계획은 계획구역 연접부와의 높이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주변지역과의 경관상 부조화를 감소시킴
- 조망형 경관계획
  - 도시경관에 검토 기준은 검토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가 떨어진 조망점으로부터 중경, 원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
- 연접부 경관계획
  - 연접부 경관계획은 인접대지와의 관계, 주변 도로의 여건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용

## 좋은 아파트 만들기 가이드 라인 예

#### 도시기반시설계획

#### - 기본방향

- 도시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주변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로서 지역
   의 토지이용이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
- 도시기본계획 및 기타 관련 도시계획사항을 검토하여 장래 계획구역 주변의 장래 개발상황 및 설치 가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과 정합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함
-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수립시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

#### - 도로

- 도로의 확보 기준은 기본적으로 계획구역내 건축되는 계획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도 로확보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수
- 주택 지역내에 위치하는 돌출형 아파트 및 다수의 단독필지 합병 후 공동주택 건축을 하는 경우 도 로의 폐지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따른 도로 확보는 검토구역 차원에서 검토해야 함

#### - 공원 및 녹지

- 공원 및 녹지 조성시 주변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검토
- 주변지역 주요 보행동선 및 계획구역 내 보행동선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는 지 검토

좋은 아파트 짓게하기

기타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방법



# 좋은 아파트 만드는 방법

공공에 의한 도시설계수립 - MA / DC 제도 등의 도입





# MA 계획 사례 – 용인 신갈지구

# • 주동 저충부 형태

#### 저츙부 외관

- ■주동의 저츙부 색채 및 형태 디자인을 통한 외관 구분
- ■필로티, 완충공간 등을 통한 유기적 연계

## 테라스하우스

- 경사지형에 테라스하우스가 입지하여 자연 지형과 조화를 이름
- ■보행레벨에서 변화 있는 경관 형성

#### $\alpha$ room

■저충부에  $\alpha$  room을 배치하여 저충부 형태 변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



















# MA 계획 사례 – 용인 신갈지구

# • 주동 외관 및 형태

#### 외관 입면 발코니

- ■계단실 등 세부적인 입면 요소 도입
- ■베란다, 측면 발코니 등에 변화를 줌으로써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함

## 주동의 상충부

■다락방 등 최상층의 평면을 특화하여 옥탑과 조화를 이루는 지붕형태 유도

## 옥외 공간

- ■주거동 1층부 정원조성으로 녹지 연계
- ■어린이공원 조성, 생태축 확보, 교차로 가각 부에 오픈스페이스 확보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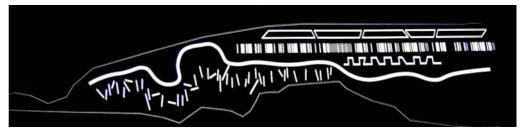




# 건축협정 사례 \_ 파주

# • 건축물 유형

- ■고속도로 그림자
  - 공장, 부분적으로 잔디 지붕을 갖는 2열의 띠형 건물
  - -높이 8m
- ■서가유형
  - -출판사, 도로변 반지하 주차장 및 상부에 강으로의 조망 확보
  - -높이 8m
- ■중추부 건물
  - -출판사 , 고밀도 중정형 건물
  - -높이 8m
- ■수변 건물
  - -출판사, 얕은 경사지붕 및 폭9m이하 의 좁고 긴 건물
  - -높이 가능한 15m이하





# 해외 사례

# • 일본 마쿠하리 베이타운

## 연도형 중정형 주거형태

- ■가로와의 관계 및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는 연도형 형태
- ■주거의 중심에 중정을 두어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고려한 중정형 형태

# 저충부 형태

- ■저츙부에 상업시설을 두어 1층 세대의 프라 이버시 문제 등 해결
- 아케이드를 조성하여 연속성 및 보행의 쾌 적성 부여

#### 다양한 입면

■ 벽면율을 지정하고 수평연속형 발코니 설치 를 금지하여 다양한 입면형태 유도













# 해외 사례

## • 싱가폴 도심부

## 저츙부 형태

- 상업시설이 연속적으로 형성될 경우 저충부 아케이드 설치를 통해 연속성 확보
- ■2충부 직접 진입 등 차별화된 계단 형태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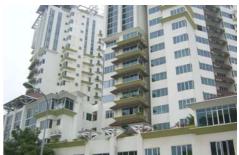
## 다양한 입면 및 형태

- ■처마 등을 활용한 변화있는 입면 구성
- ■다양한 지붕의 형태 계획









## •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

#### 조화로운 이미지 형성

■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형태의 규제보다는 재료와 색채를 유사하게 함으로써 조화로운 이미지 형성





맺음말

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서?



## • 국내 공동주택 사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

#### 단조롭고 획일적인 형태

■ 발코니 확장, 최대한의 용적률 확보 등에 의한 단조로운 입면이 나타남

다양한 형태 및 입면 유도

- 공동주택의 발코니 유형 다양화 및 녹화 유도
- 상충부 set-back등을 통한 형태 변화 유도

#### 쾌적하지 못한 보행 및 외부공간

■ 물건의 적재, 불법적인 지주간판 등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함 초래

### 보행공간의 연속성 및 쾌적성 확보

- 아케이드 등의 설치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
- 저츙부 계획을 통해 다양한 가로이미지 조성

#### 커뮤니티와 공공성의 부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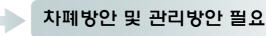
- 주거의 획일적인 배치로 인한 커뮤니티 부재
- 보행동선의 단절, 공공공간의 부재

####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공공성 확보

- 배치형태 및 저츙부 형태의 다양화 유도
-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공공을 위한 공간 확보

#### 부속시설 등 미관저해요소의 노출

상업시설의 측면 및 후면에 에어컨 실외기,
 흡배기구, 환기구 등이 노출되어 미관 저해



- 건축설비 위치를 고려하여 건물 내 공간 확보
- 설계단계부터 부속시설의 고려 필요

## 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

#### - 건축물 디자인 측면

-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경관에서 탈피하기 위한 적절한 주동형태 및 배치계획, 특색 있는 입면 계획
- 지붕 및 옥탑 부분은 다양하면서도 블록 내에서 통일감 있는 디자인 유도

#### - 경관적 측면

- 건축물 높이에 관한 규제를 통해 스카이라인 보호
- 단지 내 다양한 경관 창출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주동의 높이 변화와 도시의 조망축 설정
- 조망경관의 보호를 위해 주요경관자원 주변으로 조망 기준점을 지정

#### - 주민참여 측면(관리 측면)

- 거주 후 주민 참여에 의한 단지 주변 환경의 정비 필요
- 주민의 공동체 참여를 위한 주민협정, 전문가 자문 및 파견 제도 등의 보조장치 필요

#### - 도시기반시설 측면

- 기반시설은 시민의 각종 도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도시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계획
- 지역차원의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형성